
코로나-19(오미كرون) 확진자 대응 자료

2022.02

신라대 의료지원실

목 차

- ① 코로나-19 접촉자 기준 및 관리방식 변경사항 1
- ②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2~3
- ③ 신라대 확진자 발생 부서 감염관리수칙 4
- ④ 신라대 항원검사 기준 5
- ⑤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6~7
- ⑥ 주요 질의 응답 8~9
- ⑦ 코로나-19 확인자 관리(재택치료)변경안내 10~11
- ⑧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홍보물1,2,3) 12~14

코로나19 접촉자 기준 및 관리방식 변경사항

□ 접촉자 관리

구 분	검사	관리	비고 (관리기준)
확진자의 가족(동거인)	PCR 검사 2회 (최초, 6~7일차)	7일, 공동격리*	미접종자 또는 접종 미완료자
		7일, 수동감시	접종 완료자 * 3차 접종자(2차접종+과거 감염자) *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 인자
접촉자**	RAT(신속항원검사)		마스크 벗고 15분 이내 대화, 함께 식사한 경우

* 공동격리

(기간) 최초 확진자와 동일한 기간(7일)만 격리하고, 추후 동거인 중에서 추가로 확진자 발생 시에는 추가 확진자 이외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기간 연장 없음

(통보) 최초확진자 통해 동거인 관리사항 일괄(가구단위) 통보

(검사) 무증상 : 최초 및 6~7일차 (해제 전 검사)

(외출) 의약품 수령 등 필수적 목적 외출 허용

** 우리대학 보건실 접촉자 기준

(기준) '적절한 보호구 없이 2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와 함께 식사한 경우

□ 대상별 접촉자 관리주체 변경

접촉자		적용기준 및 관리방식
대상자별 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변경	동거인	보건소 : 최초확진자에게 일괄 안내 * 행정서류 발급 등 후속관리는 시군구청에서 전담
	취약시설 3종	보건소 : 시설담당자에게 관리기준 통보
	학교/직장	사업주/ 방역관리자 자율관리
	그 외	개인 자율관리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

□ 기본방향

-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확진자 급증 상황을 반영하여 고위험군 관리 및 위중증 예방을 목표로 방역·의료체계 전환
- 확진자·접촉자의 보건소 관리대상과 기준이 대폭 축소되면서, 보건소 관리 범위 외 대상 등 기관에서 자율관리기준 제시
 - ※ 확진자 동거인, 감염취약시설3종(요양·정신·장애인시설) 만 보건소 관리

□ 주요내용

- (원칙) 자율 방역
- (적용범위) 가구 또는 감염취약시설 3종이 아닌 일반사업장·기관에서의 확진자 발생과 접촉자에 대하여 적용
- (관리기준) 유증상자 출근 중지(재택근무 등 활용) 및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 확인 시 출근 가능

□ 조치사항

- 확진자 본인이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신고
- 확진자 발생 확인 즉시, 방역관리자는 확진자의 복무관리자에 통보 조치, 사업장 내 공지 및 접촉자 조사 실시
- 확진자 업무 복귀 기준 안내
 - 7일 격리 후 (총무팀-복무지침, 학사팀-등교지침)확인 하에 부서와 학과 여건에 따라 3일간의 교내 출입기준 설정
 - 유증상자 제외
 - 각 부서나 학과에서 **격리 준하는 생활 가능 시에만 출근 가능**
- * 주의기간 수칙 : KF94(또는 이와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은 자제

□ 교내 접촉자 조사

1순위 : 확진자와 동일공간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 확진자는 별도 격리공간으로 즉시 분리
 - * 확진자가 다수일 경우, 확진자끼리 동일 공간 격리는 가능
- 확진자가 ‘기숙사 동일 호실 생활자’ 를 동거인 신고하도록 안내
 - * 기숙사의 동일 호실 생활자는 ‘격리대상 접촉자’ 로 보건소 관리대상
- 예방접종력에 따라 격리 또는 수동감시 조치
 - 접촉자가 다수일 경우 공동격리 가능하되, 집단발생 시에는 접촉자 간 격리공간의 결합 또는 재배치 지양
 - 수동감시 대상자는 진단검사(최초 PCR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음성 확인 후에 수칙을 지키며 출근 가능

2순위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 15분 이상 대화 등

-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 유 증상 시 보건소,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인지 시부터 2일 간격으로 총 3회 실시
- 인지 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 음성이면 출근 가능

3순위 : 동일 공간부서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 유 증상 시 보건소,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인지 시 및 인지 후 6일차의 총 2회 실시
- 인지 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결과 음성이면 출근 가능

□ 교내 감염관리 수칙안내

- 감염예방을 위한 종사자 자율 건강관리 안내
 - 증상이 있을 경우 가급적 출근 중지(재택근무 활용)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주기적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권고
- 마스크 착용(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안내
- 예방접종 적극 참여 독려
- 대면접촉 줄이기(사적모임 자제)
- 소독·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등

신라대 확진자 발생 부서 감염관리 수칙

♠수동감기 기간 중 환경 감염관리 수칙 ♠

1. 보호구(KF94, 페이스 쉴트)착용하기
2. 창문과 출입구 열어 2시간간격 자연환기 시키기
3. 방문객 및 근무자 수시로 손소독 또는 손씻기
4. 손이 닿는곳 (책상, 문고리, 엘리베이터 등) 접촉 부위 표면소독
5. 유 증상 수동 감시자는 즉시 검사 조치 및 업무 배제
6. 타 부서 이동 제한 및 공용 휴게실 폐쇄

♠수동감기 기간 중 '개인별' 감염관리 수칙 ♠

1.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2. 개인 책상에 손소독제 비치 , 수시로 손 소독(15초이상 문질러서 소독)
3. 직원 간 함께 식음료 섭취 금지 , 식사 시 창문 열고 개인별 식사
4. 식사 후 본인이 이용한 자리 닦기
5. 공용휴게실 및 교내식당 이용금지, 가급적 계단 이용
6. 유증상자 발현 즉시 PCR 검사 및 결과 확인 시 까지 자가격리
7.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회의 참석 금지)

-코로나19 일상 회복지원단 -

신라대보건실 항원검사 기준

검사키트 수령 → 검사실 방문 → 자가검사

음성: 검사키트 폐기 후 복귀
양성: 검사키트 소지 후
가까운 보건소 방문(PCR검사)

▷ 검사키트 배부 대상자

- ▶ 기숙사 내 야간시간 유증상자
- ▶ 학내 확진자 접촉자 중 무증상 고위험군(증빙서류소지자)
 - 고위험 기저질환자(당뇨, 고혈압, 천식, 신부전, 결핵, 간 질환자 등)
 - 면역저하자
- ▶ 수업 중 감염성이 높은 고위험군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중 유증상자
 - 신체접촉이 많은 체육 특기생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수강생
- ▶ 학내 생활 중 37.5도 이상의 고열 확인자 중 희망자
- ▶ 단, 단순 검사 희망자는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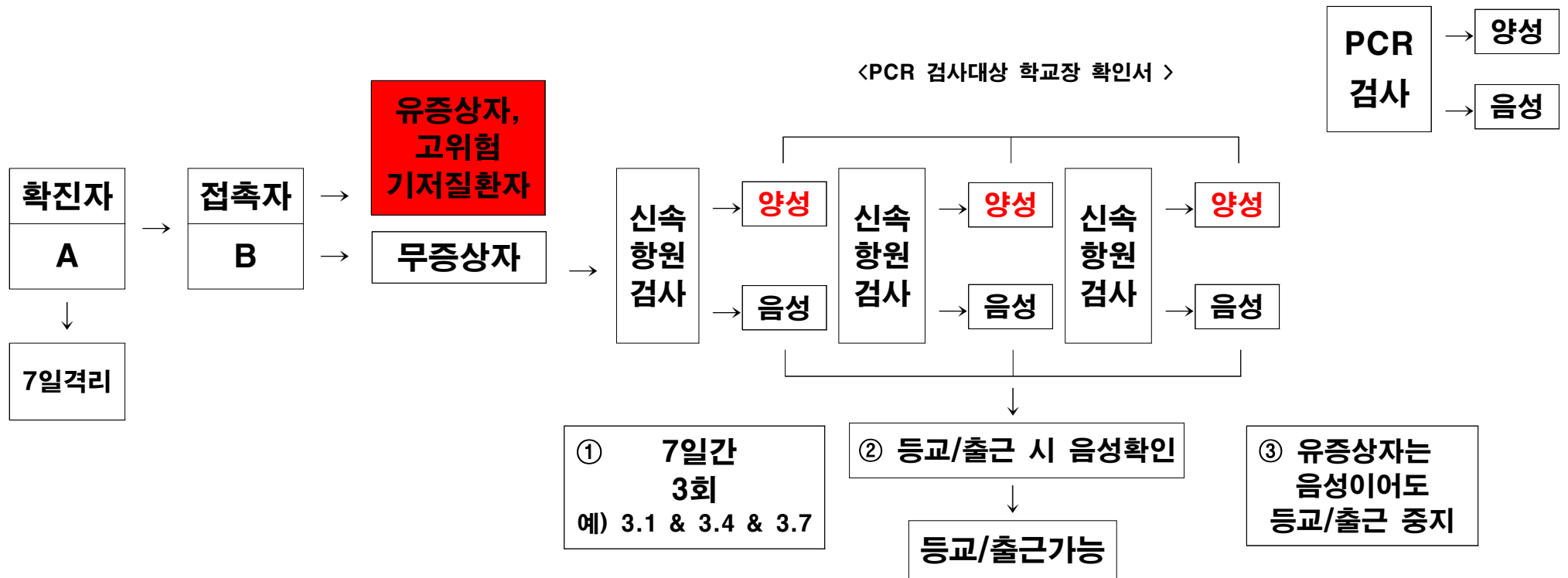
▷ 참고

☞ 무증상 이며 교내 발생 확진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따로 유선 통보 된 경우에만 보건실(에서 검사 실시

- ▶ 유증상자 : 지역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시행
- ▶ 만 60세 이상 · 역학적 연관자 : 지역보건소에서 시행하는 PCR 검사 대상자(무료)

신라대학교 의료지원실

학교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체계도



- ▶ 동일 공간(기숙사, 숙소, 부서)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 확진자 증상 발생일(또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 확진 당일
 - 1) 식사 이상의 접촉력 또는 2) 마스크 미착용으로 15분 이상 대화 접촉력
 - ①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실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
 - ② 등교/출근 시 매 회 각부서와 학과 방역담당자 음성결과 확인
 - ③ 유증상자는 PCR검사 음성일지라도 증상 없어질 때까지 등교/출근 중지(등교/출근 시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 확인)

코로나19 관련 소독 완료 또는
2022년 월 일 까지
출 입 금 지

-코로나19 대학 일상 회복지원단 장-

주요 질의 응답

Q1. 확진자 발생기관(1순위 외) 노출자가 검사를 원할 경우 PCR 검사가 가능한지요?

○ 우선순위 대상 외 검사희망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우선순위 검사 대상		PCR검사 방법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취합검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개별 검사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별 검사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취합검사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취합검사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취합검사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취합검사
	휴가 복귀 장병	취합검사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취합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개별 검사

Q2. 확진자가 나왔는데 기관 내 직원들은 PCR 검사 대상인가요?

○ PCR검사 대상은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만 해당됩니다.

교내 역학적 연관성 있는 밀접접촉대상자는 학교장 확인서 지참 하에 검사 가능 합니다.

Q3. RAT 음성인 경우 평소와 동일한 생활이 가능한지?

○ 평소와 동일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0일, 그 외는 3일 동안 KF94 또는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시설내 밀접접촉 최소화,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소모임 자제 등을 권장 드립니다.

Q4.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및 내용은?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및 관리내용
확진자 관리	
격리기간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확진자의 접촉자 관리	
자가격리 대상	· 동거가족(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종사자, 이용자)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자가격리 통보	최초확진자를 통해 동거인까지 일괄 통보 (보건소) ※ 담당자(감염관리책임자)에게 일괄 통보 (신라대) - 신라대(신라대 의료지원실) 신고
자가격리 기간	○ 2차접종 후 14일~90일인 자와 3차접종 완료자 ▷ 7일 수동감시 ○ 접종 미완료자 ▷ 7일 자가격리 ※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중에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 그 외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와 함께 격리 해제됨
자가격리 해제	6~7일차 PCR 음성확인된 경우 7일차 24:00(=8일차 0시)
접촉자 검사회수	총 2회 검사 ▷ 접촉 확인 시 1회 시행 ▷ 자가격리·수동감시 해제 전(6~7일차) 1회 시행

*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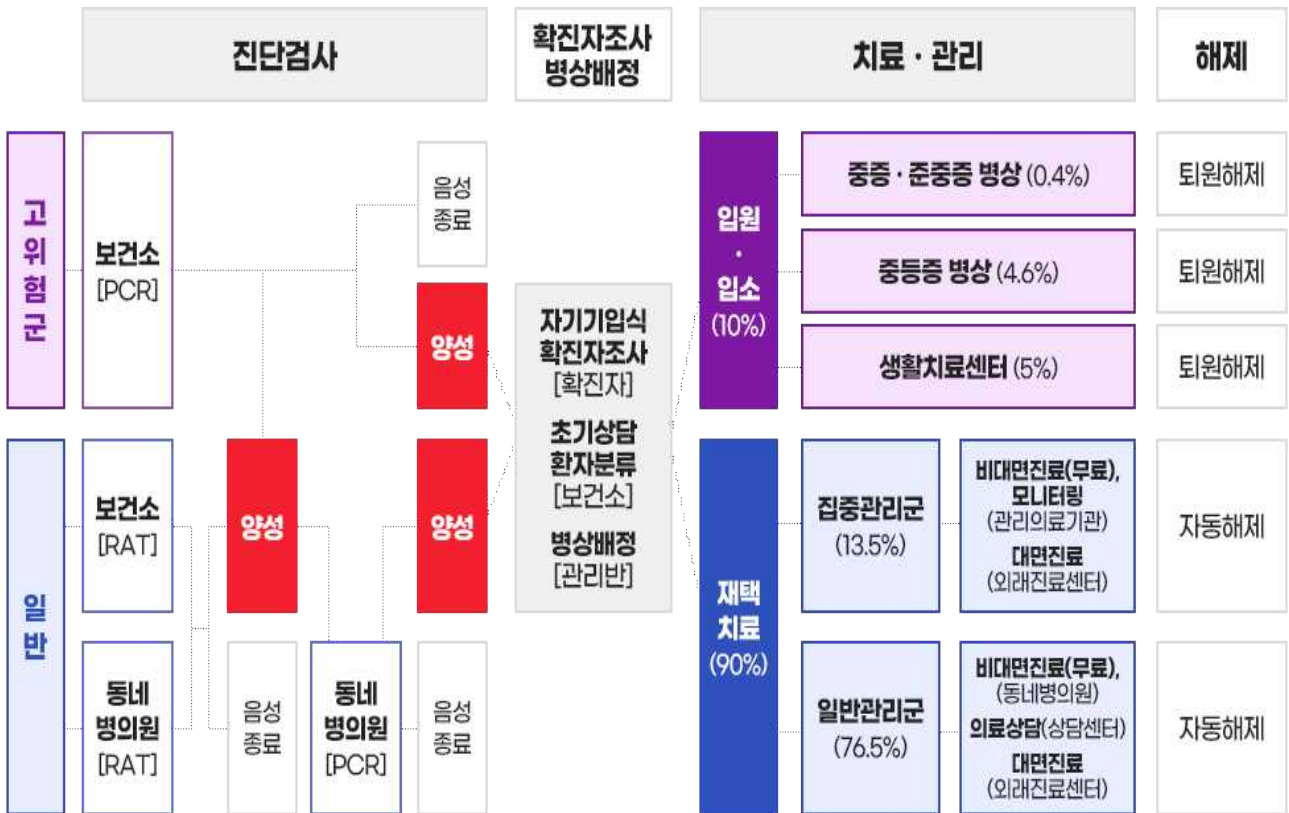
**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 **기타 시설에서의 밀접접촉자는 대학 자율관리**

관리 주체 및 방식	동거인	보건소 : 최초확진자에게 일괄 안내 * 행정서류 발급 등 후속관리는 구청(보건소)에서 전담
	장기요양시설	보건소 : 시설담당자에게 관리기준 통보
	학교/직장	사업주/방역관리자 시설 내 자율관리
	그 외	개인 자율관리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재택치료) 변경안내

전파력이 2~3배 높고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반영하여
 폭증하는 확진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보건소)와
 민간(동네 병·의원)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방역·의료체계로 개편

□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 체계도



□ 확진자 관리(재택치료) 개요



□ 주요 변경사항

○ 재택치료 **공동격리자 격리 대상 및 기간**

-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수동감시, (미완료자) 격리 7일
- 격리해제 시점: 7일차 24:00 (=8일차 0시)

* 격리해제 전 PCR 음성 확인(1회)

* 단, 해제 이후 3일 동안은 다음 사항 준수: KF94급 마스크 상시 착용, 면역저하자·중증질환 고위험군 등 접촉 금지,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방문 금지,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장소 (식당, 실내체육시설 등) 방문 금지, 집·직장 내 타인 주변에서의 취식 피하기 등

○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격리관리 방식**

- (격리통보) 확진자에 격리통보 시 확진자를 통해 일괄(가구단위) 통보
- (격리관리) 자기격리자 앱 사용 X, 1:1 담당공무원 배정 X, 실시간 이탈감시 X
- (격리의무) 격리 준수 의무는 부여되나 개별적 관리는 하지 않으며,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가능**
- (격리중 외출)* 진료, 약수령, 생필품 구매 등 불가피한 외출에 한함

* 진단검사 후 2시간 이내의 외출이 가능

구 분	현 행	조 정
격리통보	확진자, 공동격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격리통지서 발급 (격리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전달 후 <u>격리통지서 수령증</u> 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보 시 확진자를 통해 일괄(가구단위) 통보 *수령증 징구 삭제
격리해제 통보	별도 통지(유선, 문자 등)	X
격리관리	(자가격리자 앱) ○	X
	(1:1 담당공무원 배정) ○	X
	(실시간 이탈감시) ○	X
	(비고) 격리 준수 의무 부여하며, 개별적 관리 시행* , 격리장소 이탈 등 위반 시 법적조치 - 격리중 외출 허용 범위: 본인진료, 재택치료자 약 수령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재택치료추진단 담당공무원에 사전 통보	격리 준수 의무는 부여되나 개별적 관리는 하지 않으며 , 격리장소 이탈이 확인될 경우 사후 법적조치 가능 - 격리중 불가피한 외출* : 본인진료, 재택치료자 약수령, 생필품 구매 등 *진단검사 후 2시간 이내의 외출이 가능

확진자로 통보 받았나요?



▶ 생활수칙은?

외출 금지, 집안 내 격리, 화장실·물건 따로 쓰기, 자주 소독하기

▶ 자가격리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 비대면진료시 비용부담은? 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부담금 무료

▶ 격리해제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시)에 자동 해제되며,
해제 전 PCR검사는 받지 않음

▶ 이렇게 달라졌어요(O, X로 알아보는 재택치료)

구분	재택치료 키트지급	생필품지급	외출여부	건강관리
집중관리군 확진자	O	X	X 단, 대면진료 필요시 관할보건소 승인후 가능	비대면 모니터링 일2회 (병의원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확진자	X	X	X 단, 대면진료 필요시 관할보건소 승인후 가능	스스로 관리 (필요시 병의원 비대면 상담)

***재택치료(거주지 동일)동거인(가족 등)

격리해제 전 PCR 검사 하고 음성 확인 후 무증상인 경우 교내 출입가능
(22.2 기준 추후 방역지침 변동 시 변경가능)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은?



①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실시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재택치료자에게 유선 연락 (1일 2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부산시 코로나19 홈페이지 확인

② 의료진 비대면 전화상담 및 약 처방

*코로나19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 대상임

③ 지정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동거가족, 지인, 퀵 등 전달 ※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

④ (대면진료 필요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예약

***재택치료(거주지 동일)동거인(가족 등)

격리해제 전 PCR 검사 하고 음성 확인 후 무증상인 경우 교내 출입가능
 (22.2 기준 추후 방역지침 변동 시 변경가능)

확진자 중 일반관리군은?



① (증상 발현 시) 아래 의료상담 가능한 병·의원으로 전화

- (주간) 전화상담 동네 병·의원
 - (주간·야간, 주말·공휴일) 재택관리 의료상담센터
-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부산시 코로나19 홈페이지 확인

② 의료진 비대면 전화상담 및 약 처방

*코로나19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 대상임

③ 지정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동거가족, 지인, 퀵 등 전달 ※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

④ (대면진료 필요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예약

***재택치료(거주지 동일)동거인(가족 등)

격리해제 전 PCR 검사 하고 음성 확인 후 무증상인 경우 교내 출입가능

(22.2 기준 추후 방역지침 변동 시 변경가능)